**LIAPP ESSENTIAL SET 공급 계약서**

**2021년 10월 00일**

**㈜글로벌머니익스프레스 주식회사 락인컴퍼니**

|  |  |  |  |
| --- | --- | --- | --- |
| **LIAPP ESSENTIAL SET 공급 계약서** | | | |
| 계약자 | 공 급 자 | 상 호 | 주식회사 락인컴퍼니 |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289번길 20, 3동 325호 |
| 대표자 | 최 명 규 |
| 수 요 자 | 상 호 | ㈜글로벌머니익스프레스 |
|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325, 글라스타워 601호 |
| 대표자 | 성 종 화 |
| 계약  내용 | 계 약 명 | LIAPP ESSENTIAL SET 공급 계약서 | |
| 계 약 금 액 | 금 일천이백만원(\12,000,000) (부가세 별도)  - 1년 무상 유지 보수 제공  - 2년 차부터 유상 유지 보수 : 유지 보수 요율 10% | |
| 대금지불방법 | ‘첨부서류 1. LIAPP ESSENTIAL SET 공급 계약 일반조건’ 제 5조에 따른다. | |
| 계 약 기 간 | 2021년 10월 00일로부터 12개월간 | |
| 공 급 건 명 | **LIAPP ESSENTIAL SET 공급 계약서** | |

㈜글로벌머니익스프레스(이하 “수요자”라 함)와 주식회사 락인컴퍼니(이하 “공급자”라 함)는 LIAPP ESSENTIAL SET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그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 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서류1. LIAPP ESSENTIAL SET 공급 계약 일반조건 1부

**2021년 10월 00일**

“수요자”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 325, 글라스타워 601호

상 호: ㈜글로벌머니익스프레스

대 표: 성 종 화 (인)

“공급자”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 3동 3층 325호

상 호: 주식회사 락인컴퍼니

대 표: 최 명 규 (인)

**LIAPP ESSENTIAL SET 공급 계약 일반조건**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공급자” 소유의 LIAPP ESSENTIAL SET (이하 “본 소프트웨어 제품”이라 한다)을 “수요자”가 배포하고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데 있다.

**제2조 (존중 및 신뢰)**

양 당사자는 상호 존중과 신뢰로써 본 계약을 이행하며, 본 계약에 수반한 협력사항이 발생할 때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 (계약기간 및 조건)**

*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21년 10월 00일부터 2022년 10월 00일에 이르는 시점을 종료일로 한다.
  2. 양 당사자 간 본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종료 또는 계약 변경의 서면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은 그 만료일로부터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갱신된다.
  3. 본 계약은 턴키 방식으로 1년 후, 유지보수율 10%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한다.
  4. 본 계약 상의 조건은 계약 기간 중이라도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양 당사자의 사전 서면 합의에 따라 수정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는 수정 조항에 대하여 상호 날인하여 본 계약서에 첨부한다.
  5. 본 계약에 대한 내용을 “공급자”가 자사의 홍보를 목적으로 한 행위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본 소프트웨어 제품의 내용 및 사용권 범위)**

* 1.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본 소프트웨어 제품의 내용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의 보안 기능을 가진 본 소프트웨어 제품의 사용권 제공이다.
  2. “수요자”는 본 소프트웨어 제품을 본 계약에 따라 계약기간 내 계약된 어플리케이션에 한하여 본 소프트웨어 제품에 적용하여 고객에게 서비스할 수 있으나, “공급자”의 허락 없이 본 소프트웨어 제품에서 제공한 소프트웨어 및 정보에 대한 일체의 수정, 변경, 분석, 해독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제 5 조 (사용료 및 결제 조건)**

* 1. 본 소프트웨어 제품 공급에 따른 대금(이하 “사용료”라 한다)은 금 12,000,000원(VAT 별도)으로 하며, 명기된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한다.
  2. 본 소프트웨어 제품의 서비스 기준은 MAU(Monthly Active Users) 50만을 기준으로 한다. ‘기준 MAU’를 초과할 경우, MAU 30만마다 서버 증설 및 해킹 대응 리소스 증가에 따른 추가 비용(월 3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준 MAU를 초과 시 수요자에게 서버 증설의 필요성을 인지시키고 양사의 협의에 따라 진행한다.
  3. “수요자”의 서비스가 ‘기준 MAU’를 초과할 시 5.2항으로 인해 변경된 ‘기준 MAU’는 변경 전 '기준 MAU’ 와 추가 MAU 30만을 합산한 값으로 기준 MAU가 변경된다.
  4. “수요자”는 “공급자”의 청구에 이의가 없는 한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부터 30일 이내 “공급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지급한다.

**제 6 조 (보증 및 보증 한계)**

* 1. 본 소프트웨어 제품의 보증 및 정비 보증 기간은 본 계약서 계약기간과 동일하다.
  2. “수요자”의 정책에 따라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자”와 “공급자”는 협의하여야 한다.
  3.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구에 의한 별도의 Customizing 작업이 이뤄질 경우 이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 Customizing 용어 정의 : LIAPP의 보안 기능이 아닌 “수요자”의 요청으로 인한 추가 기능에 대해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 금융보안원 등의 점검에서 발생하는 이슈는 “공급자”가 지원하며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보안 기능 범위 내에서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이는 Customizing이 아닌 Minor Upgrade 영역에 속하여 별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 1.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본 소프트웨어 제품의 Minor Upgrade가 발생할 경우, 이를 “수요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다.
  2. “공급자”는 대리점 및 기타 제3자가 구두, 문서 및 기타 고지 수단을 이용하여 “수요자”에게 한 약속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공급자”는 본 소프트웨어 제품의 출고 이후 제조된 모바일 디바이스와 운영체제의 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증하지 않는다.  
     단, “공급자”는 “수요자”의 요구가 합리적일 경우, 보증기간 내에 Minor Upgrade를 통하여 지속적인 성능개선을 할 수 있다.
  4. “공급자”는 “수요자”의 잘못된 사용 또는 사용할 능력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한 없는 직접적, 간접적, 우연적 또는 결과적 손해, 비용, 손실 이익, 유실 데이터 또는 다른 손해를 포함한 모든 손해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보증하지 않는다.

**제 7 조 (지식재산권 및 권리침해)**

* 1. 본 조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각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각자 개발 또는 수집한 소프트웨어, 정보, 검색방법, KNOW-HOW 등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보유한다.
  2. “공급자는 본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특허권, 저작권, 기타 일체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며 본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지식재산권 및 어떤 권리도 “수요자” 또는 “수요자”의 고객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3. “수요자”는 “공급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 본 소프트웨어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리버스 엔지니어링, 디컴파일 또는 디스어셈블 할 수 없다. 또, “수요자”는 본 계약에서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급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소프트웨어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 복제, 번역, 재배포, 재전송, 출판, 판매, 대여, 임대, 매매, 전매, 질권설정, 담보설정, 수정, 변경, 분석, 확장 기타 “공급자”의 지식재산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4. “수요자”는 “공급자”의 상표, 상호, 로고 기타 “공급자”이나 “공급자”의 제품, 서비스 등을 표시하는 일체의 표지를 본 계약의 목적범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되며,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공급자”는 본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타인의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의장권 등을 포함한 일체의 지식재산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님을 보증하며, 이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6. “공급자”는 본 소프트웨어 제품의 권리가 제삼자에 의해 침해당하거나 본 소프트웨어 제품이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경우 즉시 “수요자”에게 해당 사실에 대해서 통지 하도록 한다.

**제 8 조 (비밀 유지)**

* 1. 각 당사자는 계약 기간 중 본 계약 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용도 이외로는 비밀 정보 및 관련 노하우를 상대방의 동의없이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된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 정보라 함은 “수요자”, “공급자” 각 당사자가 본 계약의 내용 및 그 진행을 문서나 구두 혹은 그림, 설계 등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알게 된 정보들로써, 기술적 자료, 교역상 정보, 노하우를 포함한 연구 활동의 부산물, 생산 및 판매 계획, 생산물, 서비스, 고객, 시장, 마케팅, 개발물, 고안물, 진행 과정, 연구 공식, 기술 공학,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의 구성 정보, 재정 또는 그 이외에 본 계약과 관련한 사업상의 모든 정보들을 의미한다.
  2. 전 항에 의거한 각 당사자의 의무는 본 계약 기간 및 본 계약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존속한다.
  3. 다음의 경우에는 1항에 명기한 ‘비밀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1. 각 당사자의 문서화된 기록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서 상대방에 밝힌 그 시점에 이미 각 당사자들이 알고 있는 정보
     2. 비밀정보 취득 시 공지의 사실에 속하는 정보
     3. 적법한 권한을 가진 제3자로부터 합법적으로 취득한 정보
  4. 본 계약의 계약금액, 할인율에 대해서는 제 8 조 3항의 각 항에도 불구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
  5. 각 당사자가 정부의 명령이나 법원의 결정, 기타 당사자 일방의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비밀정보를 공개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본 조의 비밀유지의무의 적용은 배제된다. 단, 해당 당사자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정을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6. 각 당사자는 그 소속 임직원들이 본 조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9 조 (계약의 해지)**

* 1. “수요자”와 “공급자”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상대방에게 서면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시정을 요구받았음에도 7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2. 일방이 해산 또는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거나 회사정리, 화의 및 파산 신청이 제기되어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이 취하되거나 기각되지 않거나 영업을 중단하거나 중단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영업취소,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4. 어음 및 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등 상대방 당사자의 자력에 중대한 변경이 생겨 본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
  2.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수요자”은 제 4 조에서 규정한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고, “공급자”이 제공한 본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제공된 정보 및 소프트웨어 등을 폐기하거나 “공급자”에게 반환하도록 한다. 단 서비스의 중단 시점 및 폐기, 반환 시점은 양 당사자가 상호 합의 하에 정하도록 한다.
  3. 본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체의 비밀정보를 상대방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단 본 계약의 해지 이후에 본 계약에 의하여 적법하게 존속하는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는 예외로 하되 상대방의 서면에 의한 확인을 거쳐야 한다.

**제 10 조 (계약의 승계)**

“수요자” 또는 “공급자” 가 다른 회사와 합병하거나 혹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결의를 했을 경우, 사전에 별도 협의 후 본 계약은 존속회사 또는 양수회사에 포괄 승계된다.

**제 11 조 (책임 면제 및 배상의 한도)**

“공급자”는 “수요자”가 본 소프트웨어 제품을 사용함에 있어 “제 6조 (보증 및 보증 한계)”에 명시된 보증의 범위에 부합할지라도 천재지변, 전쟁, 화재, 수해, 재난, 도난, 해킹, 특정 프로그램으로 인한 호환 불가, 하드웨어의 결함, 다양한 시스템 문제들에 의해 야기된 모든 손해(결과적, 우연적, 특별, 경제적 징벌적 또는 기타 이유와 유사한 모든 손해 또는 사업상 이익의 손실, 영업권의 손실, 사업에 대한 간섭, 사업 정보의 손실 또는 기타 제반 상업적 또는 금전적 손해 또는 손실 등을 포함)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만약 “제 6조 (보증 및 보증 한계)”에 명시된 보증의 범위에 부합하며 본 소프트웨어 제품의 사용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실이 있을 경우, “공급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을 발견된 상황 하에서 “공급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손실의 원인, 종류, 내용에 상관없이 본 계약에서 표기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 12 조 (불가 항력)**

“수요자”와 “공급자”는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실패나 지연 혹은 그 외 위반한 것이 폭동, 내란, 전쟁, 정부 법규 또는 규제, 천재지변, 화재사고, 파업, 태업 및 각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력을 넘어서거나 이와 유사한 사건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 조 (양도 등의 금지)**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 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담보 제공 기타 처분할 수 없다.

**제14 조 (공정계약 준수 의무)**

14.1 “공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14.2 “공급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라도 본 계약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및 편의제공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4.3 “공급자” 가 위 제2항의 행위를 한 것으로 객관적으로 “수요자”가 판단한 경우 수요자는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이하 “해지”라 한다)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등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은 물론 이에 따른 “수요자”에 발생한 손해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14.4 전 항의 경우 “수요자”는 “수요자”가 시행하는 사업에서 “공급자”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 .

**제15 조 (적용순위)**

본 계약에 수반하여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체결한 합의서, 각서, 사업계약서 등 모든 서류는 본 계약의 부속문서로 간주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계약 내용과 상이하거나 모순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며, 본 계약에 상치되는 부속문서는 그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갖지 못한다.

**제16 조 (계약 이외의 사항)**

본 계약서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 상 관례를 따른다.

**제 17 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공급자의 관할 지방 법원”을 관할로 한다.

**제18 조 (부칙)**

본 계약은 계약주체에 관하여 완전합의를 구성하며, 계약조건의 변경, 수정은 양 당사자 또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리인의 서명, 날인이 있는 서면 또는 기명 날인의 방식으로 전자 서명을 선택한 경우 해당 전자서명은 그 형태와 방식을 불문하고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 날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가지며, 각 당사자는 해당 전자서명이 적법한 서명권자의 진정한 의사 하에 이루어졌음을 보증한다. 여기서 전자서명이란 대한민국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서명을 뜻한다.

“수요자”와 “공급자”는 본 계약을 증빙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기명날인 (서명)한 후 “수요자”와 “공급자”가 각각 한 통씩 보관한다.